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5. 4. 4.>

면허조건 이행의료인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

면허(자격)종별	성명	면허(자격)번호	근무처	직책	근무실적평가

「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분기 면허조건 이행의료인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